

의안번호	2212499
의 퇴 인	이용우 의원
회 답 일	2025.10.16.
추 계 번호	25B45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4,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4,200만원(연평균 84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	42	—	—	—	—	42	8.4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짐(제1항) 2. <u>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및 지도</u>	의무규정
2	안 제4조의2(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산업재해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2.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감축 방안 3. 산업재해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4.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및 사업장 지도 방향 5. 사업장 각 주체별 안전보건관리 역할 강화 6. 건설공사·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업종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방안 7. 하청 등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노동자,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8. 화학물질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 및 개선대책 9.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10.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4항)	
3	안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u>제4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이행에 적극 협조</u> 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조(정부의 책무)	—	• 미대상 — 정부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의2(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	• 공식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3	안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4,2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2]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의2)	42	—	—	—	—	42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4,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의2)	42	—	—	—	—	42	8.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